제831차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결과

☐ 안 건 명 : 신길역 주변 하수관 이설공사 실시설계용역

☐ 심 사 일 : 2013. 8. 20

☐ 사업개요

- ○ 용 역 비 : 59,400천원
- ○ 용역기간 : 착수일로부터 80일
- ○ 사업규모 : 하수관 확대개량 및 이설
  - D300~1200㎜ → D800~1200㎜, L=240m

☐ 심사결과 : 적 정(조건부)

심사항목	심 사 내 용
1. 용역의 필요성 [자체시행 47개 공종대상여부} □ 대상 □√미대상	신길역 주변 사유지 구간에 매설된 하수관로 이전 및 확대개량을 통해 침수우려 지역의 하수관거 통수능을 확보하고, 침수예방 및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용역으로 용역시행 필요
2.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- 개략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- 소요 기술인력 산정의 적정성	[용역비 조정 : 59,400천원 → 53,900천원 (감 5,500천원, 용역비 대비 -9.2%)] [심사내역] ○ 설계비 조정 : 52,430천원 → 48,610천원 - 설계난이도 및 비교설계 유무 등 감안 -10% 감적용 ○ 성과품인쇄비 적용제외 : 909천원 → “0” ※ 공사비요율 방식에 기포함 :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14조 ○ 용역손해배상공제료 조정 : 569천원→427천원 ※ 건기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참조(기본설계분 감액)
3. 과업의 내용, 범위의 적정성 등 기타 검토의견	본 용역의 대가조정이 필요한 경우 적정 대가를 적용하고 용역수행 과정에서 용역비 집행 및 정산관리 등에 철저를 기할 것
4. 리스크 관리항목 적정성 - 용역지연·중단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 - 용역비 증가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	적정